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05

발의연월일: 2025. 5. 27.

발 의 자:김정호·임미애·이연희

김동아 • 박희승 • 윤후덕

김남희 · 서왕진 · 허성무

장철민 · 이재관 · 송재봉

김한규 · 김성환 · 김원이

정진욱 · 김교흥 · 곽상언

이언주 · 오세희 · 이수진

의원(21인)

제안이유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여 자국 내 기업 투자와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 및 국가 간 관세 장벽 조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됨. 특히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과 자원이 부족 한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추 가적인 인력 및 자본의 투입은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우리나라 역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2023년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1.0%, 매출액의 44.2%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0%에 달하며 중소기업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이 필수적임.

이에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산 업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를 둠(안 제8조).
- 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 마.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
- 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및 세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사. 산업단지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탄소중립이 시급한 업종 등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 및 탄소중립 관련 협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탄소규제에 대 응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목 표 달성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 하다.
 - 2.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 본법 _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 4.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 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말한다.
 - 5.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란 중소기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 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에 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체계

- 제5조(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탄소 중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3.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4.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부문별 시책
- 5.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 6.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7. 그 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협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등) 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 3.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계, 중소기업, 중소기업 관련 조합이나 협회 또는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 업부 소속으로 실무추진단을 둔다.
- ⑧ 그 밖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 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 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제10조(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승인 및 취소) ① 자발적 온실가 스 감축사업(이하 "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감축사업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감축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감축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감축사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축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⑤ 그 밖에 감축사업의 승인 및 취소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있다.
 - ②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검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업무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업무기준,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준용한다. 제12조(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및 인증) 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서류(이하 "인증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현황 및 자발 적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과 관련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

제13조(탄소중립 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 2. 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 3. 중소기업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를 위한 설비 도입·개선 지원
- 4.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 5. 탄소중립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 6. 탄소중립 관련 지역 사회, 기업 등과의 협력 지원
- 7. 탄소중립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및 포상
- 8. 그 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원
- 제14조(자금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할 수 있다.
- 제15조(세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

- 런 시설이나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화단 지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단지 제17조(시급업종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이 시급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탄소중립 협력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조성
 -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탄소중립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탄소중립 공동사업 발굴 및 수행

- 4. 탄소중립 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5. 그 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조합이나 협회 또는 단체 등을 결성·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

다.

-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변경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 게 된 경우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2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2조(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은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